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제 목 청탁금지법 관련 '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' 등 알림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청탁금지법 관련 '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(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-2호, 2016.9.28.)' 및 청탁금지법 Q&A 사례집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파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>위원회자료>부패방지>청탁금지법)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직장교육, 동영상자료 및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부내게시판 등에 지속 안내하여 직원들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1부.

2. 청탁금지법 Q&A 사례집 수정 사항(공개용)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수신자: 각실과, 소속기관, 공직유관단체, 시도교육청, 고등교육기관전체, 국립초중고등학교, 대학법인

주무관 **신소연** 행정사무관 **이홍복**

전결 09/29

민원조사담당관 **이병석**

협조자

시행 민원조사담당관-6656 (2016-09-29)

접수 인재개발팀-00166 (2016-10-04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(어진동)

/ www.moe.go.kr

전화 044-203-6074 전송 044-203-6093

/ sino1209@moe.go.kr

/ 공개

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